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업계
혁신

위상강화
상생발전
가치상승

수신 각회원

(경유)

제목 2023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독려 요청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관련입니다.
3. 현재 경기도 화물업종 일반화물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수료율이 65%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며, 2023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10월 말 종료되며 추가 교육일정 편성은 어려움을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알려진 바,
4. 각 회원님께서서는 교육 미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일정을 안내하시어 교육 미 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이수를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23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일정(집합·온라인)
2. 운수종사자(보수)교육 관련 행정처분 1부. 끝.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 사 장 전 재



2023년도 운수종사자 교육일정(집합 · 온라인)

☐ 보수교육

- 교육대상 :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제외)

교육 면제대상	*화물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교육을 당해 연도에 이수한 자는 면제 *전년도 10월말 기준 무사고 · 무벌점 10년 이상의 화물 운전자는 교육 면제
------------	---

- 교육예약 :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예약

- 교육형태 : 대면[집합]교육

번호	지 역	교 육 장	교 육 일 정	
1	양 주(2회)	문화예술회관 (소강당)	확정	오전 10월 16일
		양주생활문화센터	확정	오전 10월 17일
2	수 원	경기도 교통연수원	확정	보 수 일 반 【화물평일】 10월(16,23,30)일 【화물주말】 10월(21,29)일

- 교육형태 : 온라인 동영상(VOD) 교육

교 육 시 간	4시간
교 육 예 약	홈페이지내에서 교육예약
교 육 일 정	10월 20일 ~ 10월 24일
	10월 27일 ~ 10월 31일
교 육 방 법	- 스마트기기(pc 및 모바일)를 이용한 온라인 교육 - 5일 이내 4시간 동영상(VOD) 교육 수강 완료

- 예약은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본인실명인증, 본인인증으로)
올해 교육 접수는 본인 실명인증 후 본인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교육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실시간으로 예약취소 및 마감 등 변동사항 발생 가능
- 유튜브 경기도교통연수원 채널에서 동영상(VOD)접수방법 안내
화물업종 유튜브 예약 방법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Ky_01J0X88Y)

□ 위험물교육

- 교육대상 : 「물류정책기본법」에 의거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전자
※ 단말기장치장착 : 위험물, 지정폐기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차량

교육 면제대상	*화물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교육을 당해 연도에 이수한 자는 면제 *전년도 10월말 기준 무사고·무벌점 10년 이상의 화물 운전자는 교육 면제 *(보수교육 면제) 위험물 운전자교육 8시간 이수자는 당해 연도 4시간의 보수교육 면제
------------	---

- 교육형태 : 대면[집합]교육
- 교육장소 : 경기도교통연수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191번길 6)
- 교육시간 : 09:00 ~ 18:00 (휴식시간1시간 포함)
- 교육예약 : 경기도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예약

교육장	교육일	교육시간	비고
경기도교통연수원(수원)	12월 11일(월)	09:00 ~ 18:00	휴식시간 1시간포함

운수종사자(보수)교육 관련 행정처분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개정 2018. 11. 27.> [시행일: 2019. 1. 1.] 제2호의 제10호서목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처 분 기 준
10.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서.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호	○사업 일부정지(10일)

[별표 2]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조 관련)

<개정 2018. 11. 27.> [시행일: 2019. 1. 1.] 제2호의 제3호머목, 제2호의 제17호차목, 제2호 비고 제1호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과 징 금 의 금 액
3.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머.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호	30만원

※ 비고

- 위 표 제3호머목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개정 2018. 11. 27.>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과 태 료 금 액
아. 운송사업자가 법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5호	50만원
보.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70조제2항제23호의3	50만원